

화성시 장안면 제2024-43호

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기간 내에 화성시 관내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기간: 2024. 07. 29. ~ 2024. 08. 14.

2. 공고대상 및 사유

연번	대상자 성명	생년월일	주 소	주민등록증 발급 기간	공고사유
1	이*은	070713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버들안길	2024.08.01.~ 2025.07.31.	폐문부재
2	양*진	070605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	2024.07.01.~ 2025.06.30.	폐문부재

3. 신청장소: 장안면 행정복지센터

4. 준비물

- 본인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(사진부착)
 - 증명서가 없는 경우,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(신분증 지참)하여 확인 및 발급 가능
-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
(3.5센티미터 x 4.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)

※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(문의사항: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주민등록증 담당자 ☎ 031-5189-2789)

2024년 07월 29일

장 안 면 장

